

대구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20639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4. D

변론 종결2015. 6. 4.

판결 선고2015. 6. 25.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77,602,512원 및 그 중 177,304,680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6. 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1)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5. 체결된 매매계약을 127,716,81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127,716,8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A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 체결된 매매계약을 4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B,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의 가항 및 ① 피고 A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 체결된 매매계약을 4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② 피고 D, C은 각자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6.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2. 3. 16.부터 2013. 3. 15.까지(이후 2015. 3. 13.까지로 변경)로 하여 그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A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가 2014. 10. 17.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29. 대구은행에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178,436,460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 A로부터 1,131,780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위 회수금과 관련하여 확정손해금 372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구상채권의 보전 등을 위해 추가로 법적절차비용 297,46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14. 8. 5.자 매매(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4. 9. 12. 접수 제1810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9호증의 1).

라.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에게 2014. 3. 3.자 매매(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4. 4. 29. 접수 제151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 D은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4.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영천등기소 2014. 8. 8. 접수 제274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9호증의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확정손해금, 법적절차비용의 합계에서 피고 A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177,602,512원(= 대위변제금 178,436,460원 + 확정손해금 372원 + 법적절차비용 297,460원 - 회수액 1,131,78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4. 10.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A에게 최종 송달된 날인 2015. 6. 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2 매매계약이 각 체결될 무렵에는 아직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1 매매계약일인 2014. 8. 5.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4. 10. 17.에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대구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A가 대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2 매매계약일인 2014. 3. 3.과 위 매매계약을 이유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14. 4. 29. 사이의 기간인 2014. 3. 6.에 1억 3,000만 원, 2014. 4. 28.에 5,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은 사실은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 후 원고가 2014. 10. 29. 대구은행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대구광역시 동구청,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 매매계약 당시 피고 A는 이 사건 1 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B의 선의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1 부동산을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구은행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각 1억 5,600만 원, 6,000만 원으로 하는 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80,483,000원을 인수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 A가 주식회사 삼성푸드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38,222,394원, 주식회사 새나라축산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35,884,224원을 인수하고, 피고 B가 피고 A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 2,000만 원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을가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대구은행에서 이 사건 1 부동산을 담보로 1억 8,2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이 사건 1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위 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2013. 10. 18.경 피고 A의 부인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2014. 7. 31. 주식회사 새나라축산과 피고 A의 채무 35,884,224원의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4. 11.경 주식회사 삼성푸드와 피고 A의 채무 38,222,394원의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오히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1 매매계약의 계약서(을가 제1호증)에는 피고 A와 피고 B의 위와 같은 채무인수 및 상계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 B도 피고 A와 같은 축산물 유통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인수를 하였다면 피고 A의 재산상태를 잘 알았을 것인 점, ③ 피고 B의 주장에 따른다면 피고 B는 이 사건 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2억 6,000만 원임에도 피고 A의 254,589,618원(= 180,483,000원 + 38,222,394원 + 35,884,224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자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2,000만 원과 상계하여 위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B는 피고 A인 부인인 E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고 주장하는데 그 통장에 '아주버니 빌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형제 관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1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나) 갑 제9호증의 1, 10호증의 1의 각 기재,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4. 3. 21. 접수 제59625호로 근저당권자 대구은행,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4. 4. 28. 접수 제85459호로 근저당권자 대구은행,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각 마쳐져 있던 사실, 이 사건 1, 2 근저당권은 2014. 9. 12.에 말소된 사실, 이 사건 1, 2 근저당권이 말소된 당시인 2014. 9. 12. 기준으로 그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177,283,184원인 사실, 이 사건 1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는 3억 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27,716,816원(= 3억 500만 원 - 177,283,184원)이 되며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원금은 177,602,512원으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1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127,716,816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1 매매계약은 127,716,81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127,716,8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값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

1) 사해행위의 성립 피고 A는 이 사건 2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 B에 대하여 2,000만 원, 피고 D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갑 제9호증의 2, 10호증의 각 기재, 대구광역시 동구, 전국은행연합회,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대구은행, 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대구축협'이라 한다.)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1 부동산과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2 부동산이 있어 합계 3억 3,500만 원인 사실, 소극재산으로는 메리츠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 8,438,000원,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억 원, 대구축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4,000만 원에 위 피고 A가 인정한 채무 6,0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308,43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피고 D과 이 사건 2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A의 적극재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감소하고, 결국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이 사건 2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피고 A가 이 사건 2 매매계약체결일인 2014. 3. 3.과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 4. 29. 사이에 대구은행으로부터 2014. 3. 6.에 1억 3,000만 원, 2014. 4. 28.에 5,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 2의 기재,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14. 4. 29. 당시 피고 D의 주소가 피고 A의 주소와 같은 사실, 이 사건 2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3. 8. 6. 접수 제30114호로 근저당권자 대구축협, 채무자 A,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3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3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채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2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 D, C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D의 선의 여부 피고 D은 이 사건 2 부동산을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만 원을 인수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 D이 피고 A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 4,000만 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2013. 8. 20. 피고 A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의 선의 여부 피고 C은 신혼집 마련을 하기 위해 남편의 직장인 영천시에서 아파트를 알아보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2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을 소개받아 매수한 사실, ② 피고 C은 2014. 8. 2.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2 부동산을 7,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피고 D의 계좌로 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 C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이 사건 2 부동산을 담보로 경북대구낙농협동조합으로부터 5,1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④ 피고 C은 2014. 8. 8. 피고 D에게 21,757,111원을 송금한 사실 ⑤ 피고 C은 F과 2014. 8. 24. 결혼을 하고 2014. 11. 21. 혼인신고를 한 사실, ⑥ 피고 C과 F은 이 사건 2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 C은 이 사건 2 부동산의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해 이를 매수하였고 현재 이 사건 2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C은 피고 A, D과 친인척관계 등이 없는 점, ③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7,300만 원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C이 이 사건 2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 이 사건 2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2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2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2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3 근저당권이 존재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2, 10호증의 2의 각 기재, 대구축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3 근저당권은 2014. 8. 8.에 말소된 사실, 이 사건 3 근저당권이 말소된 당시인 2014. 8. 8. 기준으로 그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4,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2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는 8,1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4,100만 원(= 8,100만 원 - 4,000만 원)이 되며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원금은 177,602,512원으로 이 사건 2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2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4,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2 매매계약은 4,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D에 대한 각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치봉

판사박성민

판사김동욱

별지